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9호 2017. 9. 14.(목)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7-98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
- 사천시 공고 제2017-994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 4

회					
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7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519호(2)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7- 98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 9. 13.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2017. 9. 13. ~ 2017. 9. 27.(14일간)

3. 공 고 대 상

신	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명령일자	표 8.9시 시Ⅱ			
경북32더1558	리오	김*연	2017. 9. 11	소유자요청(불명자 운행)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

사 천 시 공 보

제519호(3)

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055-831-3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19호(4)

공 고

사천시 공고 제 2017 - 994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의한 어업면허처분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사 천 시 장

□ 어업면허 내역

면 허 번 호	어업종류 (양식방법)	어장 위치	포획 · 채취물 종 류	면적 (ha)	어업 시기	면 허 유효기간	면허일자	О	업 권	자	제한	- I
번 호								주	소	성 당	ㅈ거	비고
사천 제56호	마을어업	사천 늑도 신도	파래 외 기타	23.76	1.1. ~ 12.31	'17.09.12. ~ '27.09.11.	'17.9.12.	경남 사천	시 늑도동	초양어촌	수산관계 법령준수	사천제10호 재개발
사천 제58호	패류양식 (바닥식)	사천 서포 비토	_	15.0	1.1. ~ 12.31	'17.09.24. ~ '27.09.23.	'17.9.12.	부산광역, 거제대로 6, *동 (거제동, ²	214번길 -3**호	나*훈 오 (윤영 구* 양원		사천제7호 재개발
사천 제59호	패류양식 (바닥식)	사천 서포 비토	-	15.0	1.1. ~ 12.31	'17.09.24. ~ '27.09.23.	'17.9.12.		면 동부대로 가길 *4, *아파트)	최*균 오 (최*종, 설*	12 수산관계 수) 법령준수	사천제8호 재개발

※ 어업면허별 어장의 위치 및 구역도 : 사천시 해양수산과 비치